

『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5월 10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5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5월 21일

제1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화하고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,
-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에 따른 제도를 보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지방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 명시
(안 제5조제1항, 안 제5조제4항)
- 지방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 범위 확대(안 제5조제3항)
-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 마련(안 제5조의2)

-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·신체상의 사유 삭제(안 제10조제1호)
- 질병휴직 등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방법개선
(안 제11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 제4항
-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(표준안) :
경상북도 자치행정과 -4366(2012.2.26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성 수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별정직 시험 임용 및 재임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,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5조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시험실시를 시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것과 임용절차 등을 규정하고, 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 근거 마련과 별정직 임용 시 공고 생략대상 범위를 확대 하고
- 안제10조제1호에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 하였으며,
- 안 제11조에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 충원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임

○ 검토결과

-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에 있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도를 보완하고, 현행제도와 균형의 통틀 공무원 인사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이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